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7월 7일 김관수 의원의 12명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7. 11) 상정
-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7.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관 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정 현안문제 해결 대안이나 각종 시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설계, 연구, 분석, 조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 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재정의 건전운명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3. 용역·학술용역과제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내지 제10조)
- 용역에 관한 예산은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정함(안 제11조)
- 용역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용역 발주시 심의위원회 개최로 사업지연 등의 상황이 발행할 경우 대책은 ?	○ 집행부에서 별도 규칙을 정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 등으로 해소하는 방안 강구
○ 정보화 용역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용역 발주시에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화 용역을 포함 각종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을 줄이고, 용역의 남발을 막는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됨.
○ 전체 사업예산을 대비하여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	○ 약 5%정도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 마련
- 위원회 운영 횟수, 용역과제의 선정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반대토론

- 위원회 운영 및 중간, 최종보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상황 발생 우려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155호
의결 연월일	2003. 7. 15 (제105회)

제안년월일 : 2003년 7월 7일

제안자 : 김관수의원등 12인

□ 제안이유

- 시정 현안문제 해결대안이나 각종 시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설계, 연구, 분석, 조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 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내지 제10조)
- 용역에 관한 예산은 사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되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이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각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편성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보고회 등의 운영) ①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국장과 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과장·담당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용역결과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토록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일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